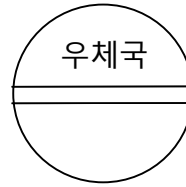
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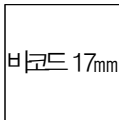
보내는 사람



바코드
18mm

음성 안내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

우편비용

토지 재산세

받는 사람

납 부 장 소

은 행 방 문

전국 은행, 우체국, 새마을금
고, 신용협동조합, 산림조합

가 상 계 좌

온 라 인

※ 상세 안내는 뒷면을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년 토지 재산세

음성
안내

바코드
18mm

납부하실 금액

까지 납부 시

원

물건소재지	면적(㎡)	과세구분	물건소재지	면적(㎡)	과세구분

※ 과세구분: 종합합산과세(1) / 별도합산과세(2) / 분리과세(3)

시·군·구 재산세 수납은행
확인용

납세자:

기관번호	세목

납세연월기	과세번호

전자납부
번호

납기 내:	까지
세 목	납기 내 세액

합 계	

납기 후:	까지
납기 후 세액	

년 월 일

수납용
바코드

수납용

지방자치단체의 장

직인

수납인

시·군·구

년 토지 재산세

도시지역분
지방교육세

납세고지서
검 영수증

납세번호

기관

세목

연월기

과세번호

납세자

납세번호

주 소

과세대상

수납용

수납용
바코드

세 목	납기 내 금액	납기 후 금액	과세표준	납기 내
종합합산과세				원
별도합산과세				까지
분리과세				
도시지역분				원
지방교육세				까지
합 계				

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 위 세액을 영수합니다.

년 월 일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

장직인

수납인

담당자

문의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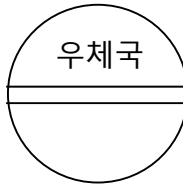
※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210mm × 297mm(CP지 90g/㎡)

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			재산세 부과 안내																			
구분	재산세(토지)		과세근거	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																		
시가표준액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가격		납세의무자	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																		
(×)	(×)		납부지연 가산세	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																		
공정시장가액비율	70%																					
(=)	(=)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재산세(토지) 과세표준																					
(-) 감면	(-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																					
(×)	(×)		세부담 상한제도	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																		
세율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종합합산</td> <td>5천만원 이하</td> <td>0.2%</td> </tr> <tr> <td>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</td> <td>10만원+5천만원 초과금액의 0.3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별도합산</td> <td>1억원 초과 2억원 이하</td> <td>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0.5%</td> </tr> <tr> <td>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</td> <td>40만원+2억원 초과금액의 0.3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2">분리과세</td> <td>10억원 초과</td> <td>2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0.4%</td> </tr> <tr> <td>-</td> <td>0.07%, 4%, 0.2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※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가감 가능				구분	과세표준	세율	종합합산	5천만원 이하	0.2%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0만원+5천만원 초과금액의 0.3%	별도합산	1억원 초과 2억원 이하	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0.5%	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0만원+2억원 초과금액의 0.3%	분리과세	10억원 초과	2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0.4%	-	0.07%, 4%, 0.2%
구분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
종합합산	5천만원 이하	0.2%																				
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10만원+5천만원 초과금액의 0.3%																				
별도합산	1억원 초과 2억원 이하	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0.5%																				
	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0만원+2억원 초과금액의 0.3%																				
분리과세	10억원 초과	2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0.4%																				
	-	0.07%, 4%, 0.2%																				
(=)	(=)																					
산출세액	재산세(토지) 산출세액																					
(-)	(-)		구제신청 기한 안내	이의신청 -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 -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																		
세부담상한 초과액	세부담상한액 =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× 150%																					
(=)	(=)																					
납부할 세액	재산세(토지) 납부할 세액																					
구분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																				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																				
지방자치단체 활용란																						

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보내는 사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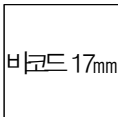
바코드
18mm

음성안내

과세번호	
담당자	문의처

토지 재산세

받는 사람



우편반송용

자동납부 현황

금융회사(신용카드회사)

예금주(소유주)

계좌번호(신용카드번호)

성명(법인명)

자동이체(납부)일

※ 납부기한 전에 예금 잔액 또는 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예금 잔액 또는 한도가 부족하면 자동납부가 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 확인한 후 별도의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계좌이체(신용카드) 자동납부 통지서

귀하(귀 법인)께서 납부하실 재산세는 계좌이체(신용카드) 자동납부를 신청하신 예금계좌(신용카드)에서 해당 자동이체(납부)일에 자동납부됨을 알려드립니다.

년 토지 재산세

음성
안내

바코드
18mm

납부하실 금액

원

물건소재지	면적(㎡)	과세구분	물건소재지	면적(㎡)	과세구분

※ 과세구분: 종합합산과세(1) / 별도합산과세(2) / 분리과세(3)

시·군·구

년 토지 재산세

도시지역분
지방교육세

납세고지서

납세번호

기관

세목

연월기

과세번호

납세자

납세자번호

주소

과세대상

귀하(귀 법인)께서는 자동납부 신청자로서 이 납세고지서로는 납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세목	납부할 세액	과세표준	납기 기한
재산세	종합합산과세		까지
	별도합산과세		
	분리과세		
	도시지역분		
지방교육세			담당자
합계			문의처

위 세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지방자치단체의 장직인

※ 납부 결과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예금계좌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납부할 세액 산출 구조			재산세 부과 안내										
구분	재산세(토지)		과세근거	「지방세법」 제104조부터 제123조까지 및 제141조부터 제154조까지									
시가표준액 (×)	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시가격 (×)		납세의무자	재산세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									
공정시장가액비율 (=)	70% (=)		납부지연 가산세	「지방세기본법」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액의 3%가 부과되고, 해당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(최대 60개월까지) 그 지방세액의 0.66%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 ※ 계산식 납기 내 지방세액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의 3%) + 납부지연가산세(납기 내 지방세액 × 0.66% × 경과월수)									
과세표준 (-) 감면 (×)	재산세(토지) 과세표준 (-)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감면 (×)												
세율	구분	과세표준			세율								
	종합합산	5천만원 이하			0.2%								
		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		10만원+5천만원 초과금액의 0.3%								
	별도합산	1억원 초과	25만원+1억원 초과금액의 0.5%										
		2억원 이하	0.2%										
분리과세	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40만원+2억원원 초과금액의 0.3%											
	10억원 초과	280만원+10억원 초과금액의 0.4%											
※ 조례에 따라 표준세율의 50% 가감 가능													
(=)	(=)		세부담 상한제도	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는 제도									
산출세액 (-)	재산세(토지) 산출세액 (-)		구제신청 기한 안내										
세부담상한 초과액 (=)	세부담상한액 = 직전연도 세액상당액 × 150% (=)		이의신청	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									
납부할 세액	재산세(토지) 납부할 세액		심판청구	-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※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	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도시지역분</td> <td>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</td> <td>0.14%</td> </tr> <tr> <td>지방교육세</td> <td>재산세 납부할 세액</td> <td>2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구분	과세표준	세율	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	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
구분	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
도시지역분	재산세 과세표준과 동일	0.14%											
지방교육세	재산세 납부할 세액	20%											
지방자치단체 활용란													